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또는
종합건설업 보호구간 신설 등》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43호)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55호)
- 김희정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37호)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90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645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제2218455호)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제2219337호)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V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제2219990호)	5
1. 제안경위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V . 검토의견	7
1.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또는 종합건설업 보호구간 신설 등 (문진석·이연희·김희정의원안 제16조제1항제4호 등 및 김정재 의원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7
2.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 공사예정금액 상향 (김희정의원안 제16조제2항)	24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43호)

1.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7.

다. 회 부 일 : 2026. 4.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Ⅱ. 이연회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55호)

1.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

가. 발 의 자 : 이연회의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6. 4. 21.

다. 회 부 일 : 2026. 4.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Ⅲ.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37호)

1.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

가. 발 의 자 : 김희정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6. 18.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그런데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수주에 필요한 다수 면허보유 곤란, 실적부족 등으로 인해 입찰참여 자체가 어려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전문시장은 57%가 개방된 반면, 종합시장은 8.7%만 개방되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더군다나 업역 규제 폐지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저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으나, 개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건설산업이 퇴행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되었으나 지난 18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IV.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90호)

1.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15.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2018년에 마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같은 해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까지 전문업체 보호구간을 2억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진출을 전면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전문업체의 지속적인 보호요구로 보호구간이 계속 상향 연장되면서 중소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아놓아 종합업체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임.

종합업체의 98%가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문공사의 종합업체 진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역의 영세한 종합건설업체는 장기간 수주기회 상실로 도산이 우려됨.

한편, 전문건설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소위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이 도래하고 있어 영세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시장잠식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업체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체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업역간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V. 검토의견

1.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또는 종합건설업 보호구간 신설 등 (문진석·이연희·김희정의원안 제16조제1항제4호 등 및 김정재의원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개정안들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과 관련하여,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간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안(문진석·이연희·김희정의원안)과 종합건설업 보호구간을 신설하고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 허용시기를 유예하려는 안(김정재의원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문진석·이연희·김희정의원안은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도급이 금지되는 범위를 현행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인 공사(문진석의원안·김희정의원안)’ 확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예정금액 미만인 공사(이연희의원안)’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문진석의원안·이연희의원안·김희정의원안)하려는 것임.

다음, 김정재의원안은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의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현행	문진석의원안	이연희의원안	김희정의원안	김정재의원안
제16조(건설공사 의 시공자격) ① 건설 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 는 해당 건 설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 을 등록하여 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는 해당 건 설업종을 등 록하지 아니 하고도 도급 받을 수 있 다.	제16조(건설공사 의 시공자격) ① ----- ----- ----- ----- ----- ----- -----. ----- ----- ----- ----- ----- ----- ----- ----- ----- --.	제16조(건설공사 의 시공자격) ① ----- ----- ----- ----- ----- ----- -----. ----- ----- ----- ----- ----- ----- ----- ----- ----- --.	제16조(건설공사 의 시공자격) ① ----- ----- ----- ----- ----- ----- -----. ----- ----- ----- ----- ----- ----- ----- ----- ----- --.	제16조(건설공사 의 시공자격) ① ----- ----- ----- ----- ----- ----- -----. ----- ----- ----- ----- ----- ----- ----- ----- ----- --.
1. 2개 업종 이상의 전 문 공 사 를 시 공 하 는 업종을 등 록한 건설 사 업 자 가 그 업종에	1. (현행과 같 음)	1. (현행과 같 음)	1. (현행과 같 음)	1. ----- ----- ----- ----- ----- ----- -----

현행	문진석의원안	이연희의원안	김희정의의원안	김정재의원안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u><단서 신설></u>				----- ----- ----- ----- ----- ----- <u>다만, 공사예정금액</u> <u>(「부가가치세법」</u> <u>에 따른 부가가치</u> <u>세와 발주자가 제공</u> <u>한 재료비를 포함한</u> <u>다. 이하 같다)이 4.</u> <u>3억원 미만인 종합</u> <u>공사를 원도급받는</u> <u>경우는 제외한다.</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가능한 시설물을 대	4. ----- ----- ----- ----- ----- ----- ----- -----	4. ----- ----- ----- ----- ----- ----- ----- -----	4. ----- ----- ----- ----- ----- ----- ----- -----	4. ----- ----- ----- ----- ----- ----- ----- -----

현행	문진석의원안	이연희의원안	김희정의의원안	김정재의원안
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 다)이 4억 3천 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7. (생략)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	----- ----- ----- ----- ----- ----- -----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 다)이 10억 원----- ----- ----- ----- ----- ----- 5. ~ 7.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 ----- ----- ----- -----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 ----- ----- ----- ----- ----- 5. ~ 7.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 ----- ----- ----- ----- ----- -----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 다)이 10억 원----- ----- ----- ----- ----- 5. ~ 7.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 ----- ----- ----- ----- ----- ----- 다만, 공사예정금액----- ----- ----- ----- ----- 5. ~ 7. (현행과 같음)

현행	문진석의원안	이연희의원안	김희정의원안	김정재의원안
<u>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27년</u>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생략)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 ② (생략) ③ ----- ----- ----- ----- ----- <u>2030년</u> ----- ----- ----- ④ (생략)

(1) 개정안들의 발의 배경

개정안들은 발의 배경과 관련하여 2018.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18년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업종은 종합공사만을,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공사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업역을 구분하였는데,¹⁾

전문건설사업자는 대부분의 사업물량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저가·일괄 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등을 통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하도급 관리 및 입찰 영업에 치중하는 건설

1)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991호, 2018.12.18. 일부개정, 2019.6.19. 시행)(2018.12.31. 개정되기 전 법률)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거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된 바 있음.²⁾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단체 간의 협약³⁾을 통해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 건설업종에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동 제도는 2018.12.31. 법률 개정을 거쳐 2021.1.1.부터 시행⁴⁾되었음.

또한, 동 제도의 시행에 있어 법률 개정 시 종합건설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①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2023년까지)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 제한,⁵⁾ ②1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간 하도급 금지,⁶⁾

2)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개정이유,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18.11.26.) 회의록 참고

3) 참고자료1(p.33.) 참조

4)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5)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제16조·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 허용(2024년부터)⁷⁾
이라는 보호장치를 두었음.

【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 ▶ 진출요건: ①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 ②직접시공 원칙
- ▶ 일정: 업계 적응기간 등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공공: '21~, 민간: '22~)
- ▶ 전문건설업체 보호장치
 - ①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 한시 제한(~'23)
 - ②1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간 하도급 금지
 - ③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해 종합공사 수주 허용('24~)*

※자료: 국토교통부

*주- 음영 표시: 각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가 2027년부터로 변경됨.

6)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7)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제16조·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및 보호구간 규정의 유효기간 삭제
(문진석·이연희·김희정의원안 제16조제1항제4호 등)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 한시 제한’은 이후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 등을 사유로 한 전문건설업계의 보호구간 확대 요청으로, 2021년 4월에는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⁸⁾ 2022년 6월에는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⁹⁾에 대하여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함으로써,¹⁰⁾

2023년 12월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범위에서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원도급을 제외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6.12.31.까지로 하였음.¹¹⁾

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호, 2021.4.15. 일부개정 및 시행)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9) 참고자료2(p.35.) 참조

1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5호, 2022.6.10. 일부개정 및 시행)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1)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865호, 2023.12.29. 일부개정, 2024.1.1. 시행)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공사예정금액 기준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연혁】

21년 1월	21년 4월	22년 6월	24년 1월
•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2023년까지 제한)	•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2023년까지 제한)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한 고려 가능	•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2023년까지 제한) • 2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한 가능(2023년까지 유효)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2026년까지)

동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7.1.1.부터는 종합건설사업자가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는데,

문진석의원안·이연희의원안·김희정의의원안은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문진석의원안·이연희의원안·김희정의의원안 공통),

현행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구간을

중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인 공사(문진석의원안·김희정의원안)’로 확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예정금액 미만인 공사(이연희의원안)’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종합건설업 보호구간 신설 및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수주 허용 유예(김정재의원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문진석·이연희·김희정의원안과 달리 김정재의원안은 종합건설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6조제1항제1호¹²⁾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제16조제1항제4호¹³⁾는 종합건설

1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13)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사업자가 업종별 업무범위 등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김정재의원안은 이같은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규정으로 인해 종합건설 사업자가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없는 불균형이 존재하고 중소 종합건설사업자에게 경영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아,

안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의 금액과 동일하게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원도급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또한,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의 전문건설업체 보호 장치 중 ‘전문건설업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해 종합공사 수주 허용’과 관련하여,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참고자료4(p.37.)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 ▶ 진출요건: ①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 ②직접시공 원칙
- ▶ 일정: 업계 적응기간 등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공공: '21~, 민간: '22~)
- ▶ 전문건설업체 보호장치
 - ①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 한시 제한(~'23)
 - ②1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간 하도급 금지
 - ③전문건설업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해 종합공사 수주 허용('24~)*

※자료: 국토교통부

동 규정은 당초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¹⁴⁾하였으나, 2023년 12월 법률 개정 시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2026년까지) 연장하면서, 전문건설업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 허용 또한 3년(2026년까지) 유예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¹⁵⁾하도록 한 것임.

14)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제16조·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865호, 2023.12.29. 일부개정, 2024.1.1. 시행) 개정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사업자 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 또한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중소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관련 기관 의견 및 고려 사항

동 개정안들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문진석의원안 · 이연희의원안 · 김희정의의원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 보호구간은 한시법적 성격으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종료가 필요하고, 종합건설업체도 대부분 중소기업체로서 전문건설사업자 보호구간 유무가 영세 종합건설업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바, 2018년 노사정 합의대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호구간 확대 및 유효기간 삭제에 동의하며,

다만, 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에 대하여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대한기계설비협회) 보호구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호구간의 하한(예: 10억원)을 규정(대한전문건설협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전문건설업계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2026년 1월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법률안¹⁶⁾은 보호구간은 현행과 같이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유지하고, 그 유효기간만 3년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다음, 김정재의원안에 대하여는,

대한건설협회는 6년 동안 전문건설업계 보호구간으로 불공평한 희생을 감내해 온 영세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종합건설업계에도 보호구간 신설이 필요하고, 또한 현행 법령에도 불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450호, 2026.1.3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구하고 불가피하게 전문업체 보호구간의 연장이 논의된다면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도 동일한 기간 동안 시행시기를 유예하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전문건설사업자는 1개 또는 2개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극히 드물어 상호시장 개방 정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를 통해 기존 원·하도급 구조와 달리 계약 단계를 줄이고 직접 시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양 업체가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고, 각 법률안에 따라 보호 대상과 보호구간 확대의 범위 또는 방식, 유효기간 삭제 여부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수주현황과 그에 따른 불균형 정도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보호구간 신설·확대 및 유효기간의 필요 여부, 보호구간의 적정 금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수주실적 분석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¹⁷⁾을 진행(2025.11.~2026.11.)하고, 정부·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¹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 협의체 논의사항, 한시 일몰 보호구간 규정의 취지, 상호시장 개방에 대한 양 업계의 과거 합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바,¹⁹⁾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의 보호구간 및 그 유효기간 규정,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 시행 시기 조정 시, 업계 간의 이견 해소를 통해 합의²⁰⁾를 도출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7) 주요 과업내용

가. 건설산업 업종별 수주실적 및 향후 수주전망 분석

- 업종별(종합·전문) 공공·민간 건설공사 수주 실적(건수·금액 등) 분석
-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등)에 따른 건설업계(종합·전문) 영향 분석
- 現 제도 유지 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업종별 수주전망 예측

나. 상호시장 진출 보완방안 검토

- 당초 상호시장 진출 제도의 취지 달성 및 제도효과 등 분석
- 상호시장 완전개방('27.1월부터 4.3억원 이하 전문공사 개방) 및 전문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종합건설업 진출 허용 등의 적정성 검토
 - 적정성 검토에 따라 보호구간 재설정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에 대한 제도화 방안 등 검토
- 제도 보완을 위한 이해관계자(발주자·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 제도개선 이후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전망 예측

다. 건설산업 발전방안 검토

- 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 관점의 상호시장 진출제도 개선 검토
- 중장기 관점에서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발전방안 모색

18) 2026.4.27.부터 건설산업 상호시장 관련 업계 협의체 운영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정보원 등 참여
- 4차례 회의 개최(2026.8.28. 기준): 상호시장 진출 수주실적 및 예측에 관한 분석방법론, 근거 데이터 등 논의

19)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및 일몰연장 시에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11회 개최 후 합의안을 도출하였다고 설명함.

20) 참고자료2(p.35.), 참고자료3(p.36.) 참조

2.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 공사예정금액 상향

(김희정의원안 제16조제2항)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종을 도급받을 수 있는 요건 중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와 관련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상한을 ‘3억원 미만(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10억원 미만(법률에 직접 규정)’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김희정의원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u>주된</u>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u>범위와 기준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②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된</u> ----- <u>기준은</u> ----- ----- 1. <u>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u> 2. <u>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의제부대공사의 개념

‘의제부대공사’란 현행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말함.

현행법 제16조²¹⁾는 제1항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는 각각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제5호),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제6호)에 각각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종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 제21조²²⁾에서는 부대공사의 범위를 ①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②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주된 공사의 **중된 공사**(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와 관련해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 간 종속성 및 연계성, 주된 공사 건설사업자의 시공에 따른 품질 및 안전 확보 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②2종 이상 전문공사 복합공사의 **나머지 부분 공사**(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관련해서는, 전체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금액 요건을 두고 있음.²³⁾

이 중 ②2종 이상 전문공사 복합공사의 **나머지 부분 공사**(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는 1989년 전문건설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1] 부대공사 판단요령

2. 부대공사 판단기준

- 나.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업자는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
- 이 경우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여부(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적용사례》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1. 당해 공사는 웅벽설치 L=321.3m, 아스팔트덧씌우기 A=2,050㎡, 부대공 1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은 205,500,000원임.
2. 공종별 구성 비율은 철근·콘크리트 61.7%, 지반조성·포장공사 27.5%(포장공사 20.8%, 토공사 6.7%), 기타 부대공 10.8%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100%)로 발주함.

도입 당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주된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도록 규정하였던 조문²⁴⁾에 따라 ‘의제부대공사로’ 지칭하고 있음.

(2)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의 연혁 및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은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 중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89년 최초 규정 시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을 그 인정 기준으로 하였고, 이후 1993년, 1994년, 1997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 공사예정금액을 6천

24) 「건설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59호, 1989.7.18. 일부개정 및 시행)

【제정·개정이유】

전문건설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주된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도록 함(令 第18條第2項).

제18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2조각항에서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한다.

②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이고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본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9.7.18. 신설>

만원 미만(1993년)→7천만원 미만(1994년)→ 1억원 미만(1997년)→2억원 미만(2005년)→3억원 미만(2007년)으로 상향하였음.

【 의제부대공사 도입 및 개정(시행령) 연혁 】

1989년 신설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7년 개정	2005년 개정	2007년 개정
공사예정금액 4천만원 미만	공사예정금액 6천만원 미만	공사예정금액 7천만원 미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 미만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연혁 법령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인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은 2007년 개정²⁵⁾된 이후 약 19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을 상향(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하고,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관련 기관 의견 및 고려 사항

의제부대공사는 ‘전문건설업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정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의 설정이 전문건설업계 및 종합건설업계 간 공사 수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88호, 2007.12.28. 일부개정, 2008.1.1. 시행)

개정안에 따른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 확대에 양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대한건설협회는 2개 이상 복합 공정에 대한 계획·관리·조정 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규모의 복합공사를 의제부대공사로 시공할 경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대되고, 종합공사로 발주되어야 할 물량을 전문공사로 강제 배분하여 전문건설업계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게 되며,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 허용이라는 생산체계 개편의 대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오히려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현행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은 2007년 개정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자재비·노무비 인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상호 시장 개방 이후 발생한 수주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의제부대공사의 인정 기준 확대’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살펴본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및 보호구간 규정의 유효기간 삭제’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양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 내용이 의제부대공사의 확대 또는 폐지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바,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의제부대공사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행 의제부대공사 인정 기준의 적정성 여부 및 적정 금액, 의제부대공사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부대공사의 인정 취지를 넘어 전문건설업종의 공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종 간 종속성이 없는 종합공사까지 부대공사로 폭넓게 인정될 소지가 있고, 종합공사 수행 역량을 갖추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경우 무자격 시공 확대, 품질·안전 저하,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 간 갈등 심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문

노사정은 발주자, 건설기업, 건설근로자 등 산업 참여주체 모두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립된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 6. 28.)」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2018. 7. 25)」에 기초하여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아래와 같이 혁신해 나갈 것에 합의한다.

1. 노사정은 1976년 도입된 이후 건설기업 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제한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하여 종합·전문건설기업 간의 자유로운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한다.
 - ①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 간의 컨소시엄에 대해 종합공사 도급을 허용하되,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부속된 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도급 절차·방법 등에 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② 종합건설기업이 해당 종합업종에 속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전문공사의 도급을 허용하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소액 공사의 종합건설기업 간 하도급을 제한한다.
 - ③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신규 고용과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업역제한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의 순으로 해제하되, 전문건설기업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은 영세 기업 보호, 상호 시공경험 축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허용한다.
2. 노사정은 건설기술의 발전, 공법의 융복합 등 시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설업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 ①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 낮은 전문성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은 업종, 건설수요의 변화로 신설이 필요한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단기 업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② 건설기업의 시공역량 제고, 중소 건설기업의 육성, 건설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 등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방안을 2020년까지 수립한다.
 - ③ 업종개편으로 인한 발주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우량기업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실적 등에 관해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기업 주력분야 공시제」를 2021년까지 도입한다.

3. 노사정은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기술·기능인력 중심의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 ①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자본금 요건은 건설기업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2020년까지 현행 대비 5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되, 영세 부실업체 난립이나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약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추진해 나간다.
 - ② 자격등급 중심의 현행 전문인력 보유요건은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통한 기술역량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건설업계의 고용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에 착수한다.
4. 이 선언문에 담기지 아니한 건설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편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세부절차 등은 이 선언문에 부속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른다.
5. 정부는 제1항에서 4항에 걸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발의를 국회에 조속히 건의하고 건설 노사는 개정안의 국회의결을 포함한 후속 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6. 아울러 노사정은 향후에도 부실 패이퍼컴퍼니의 퇴출, 직접시공 활성화,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 일자리 확충 및 질 개선 등을 통해 건설산업 육성·발전과 건설근로자 등 산업 참여주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나간다.

2018. 11.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 병 준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 주 현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건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 병 수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

이 봉 남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보완조치 합의서

정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28.)」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11.7.)」에 기초하여 2021.1.1일부터 시행 중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완조치를 시행할 것을 합의한다.

1. 정부와 협회는 건설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되, 급격한 시장 재편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
 - ①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3.12.31일까지 공사에정금액 2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공정한 경쟁 여건 아래 상호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 세부기준 개정의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2023.12.31일까지 추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강구한다.
2. 정부는 이상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 아래 건설산업 혁신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2022. 5. 30

국토교통부
장 관

위 희룡

대한건설협회
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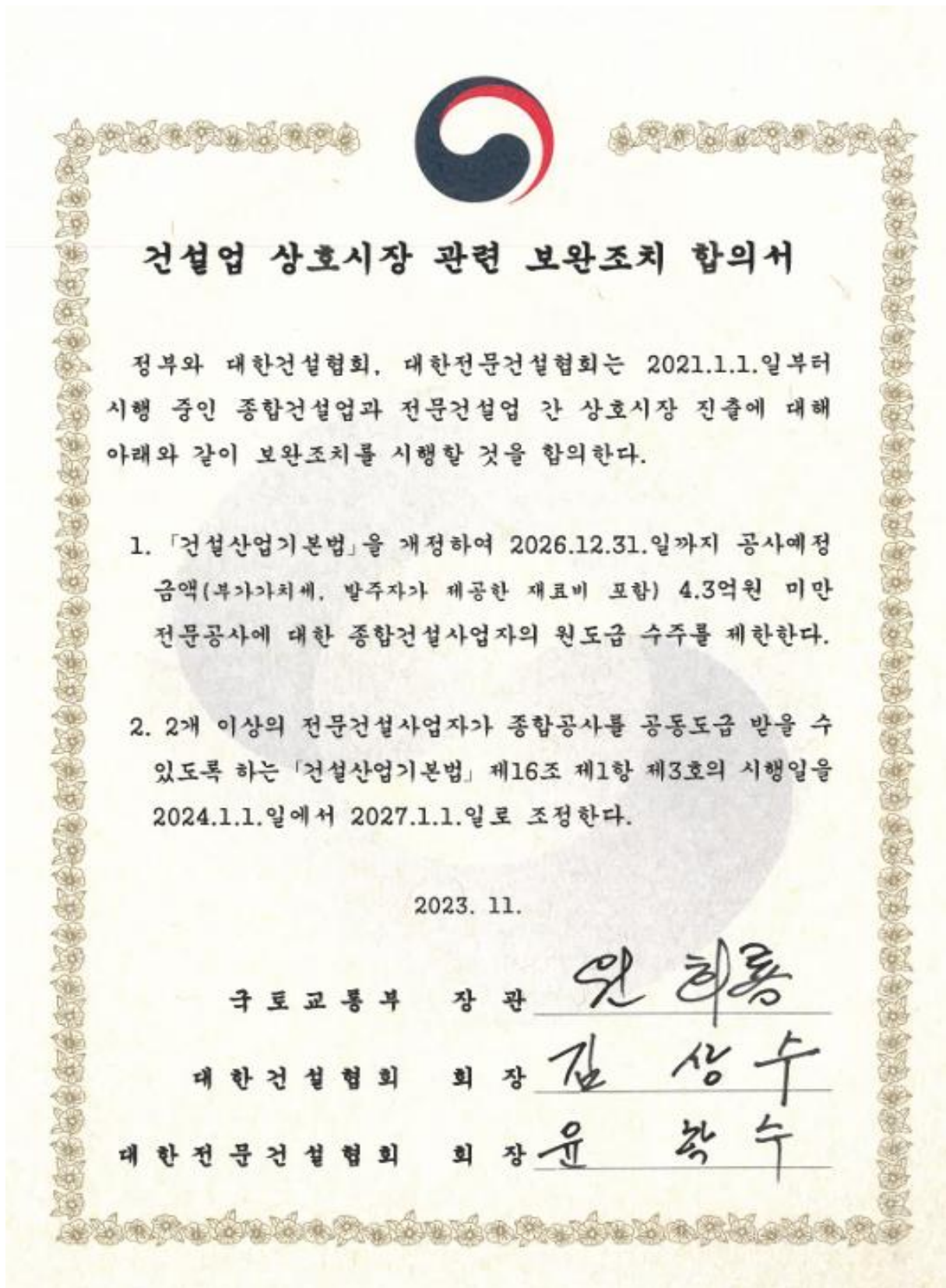
김 상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장

노 석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 장

정 민홍



참고 4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마.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가)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填)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천장·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펜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서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문·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캐노피·출입차단기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흡통공사 등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라.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부품, 입체 구성재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 외벽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 · ALC판넬 · PC판넬 · 세라믹판넬 · 알루미늄복합판넬 · 사이딩판넬 · 클린복합판넬 · 시멘트보드판넬 ·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롤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거나 뿔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뿔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 · 방수공사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 플러스터 · 회반죽 ·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뿔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뿔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접착 및 뿔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 고령토 ·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 ·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 · 실링재 · 에폭시 · 시멘트모르타르 ·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 방습 ·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3)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내벽·외벽·바닥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석재타일 붙임공사를 포함한다),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마. 조경식재·시설물공사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뿌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경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사. 구조물	구조물 해체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해 체 · 비 계 공 사업	· 비계공사	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시스템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추락·낙하방지시설공사, 분진·방진망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아. 상 · 하 수 도 설 비 공 사 업	상하수도설비공사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자. 철도 · 궤 도 공 사업	철도 · 궤도공사	철도 ·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반침목공사, 도상공사, 고무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차. 철강구조물공사	철강구조물공사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조립 · 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카. 수중 · 준설공사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 ·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 · 항로 ·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타. 승강기 · 삭도공사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 · 화물 ·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 · 개설 ·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 ·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파. 기계설비 · 가스공사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내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설치공사·경상정비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 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수열·연료전지(전기공사는 제외한다)의 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저온 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자동크린넷설치공사, 염수분사·자동살수장치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변경공사	
하.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마)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바)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 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 설 중 온수보일러 · 온 수기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 · 변경공사	
	3) 난방공사 (제1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 보일러 ·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 러 · 가정용 화목보일 러 · 태양열 집열기 · 1 종압력용기 · 2종압력 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 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 사	
	4) 난방공사 (제2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 만kcal/h 이하의 온수 보일러 · 구멍탄용 온 수보일러 · 가정용 화 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사	
	5) 난방공사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 공사	
거. 시설물 유 지 관 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 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 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재축 및 대수 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 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 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로 행하여지는 건축물 의 개량·보수·보강 공사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 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 지 유효함]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난방공사(제1종)
 - 나. 난방공사(제2종)
 -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